

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
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
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·같은
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
여 서울특별시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
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
업(이하 "집단에너지공급사업"이라 한다)의
시행 및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중 "허가를 받은 자"를 "등록
을 한 자"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12조중 "수용가"를 각각 "사
용자"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"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
은"을 "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
신고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
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
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"을 "집
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
보조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00
----------	-----

2000년 11월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9월 19일,
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회부일자 : 2000년 9월 21일 회부

다.상정일자

-제1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
경수자원위원회(2000년 10월 5일 상정, 보류)

-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
경수자원위원회(2000년 11월 6일 상정,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환경관리실장 김승규)

가.제안이유

도심지 및 관광지역의 화장실을 개방하여
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
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
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주요골자

▣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조건을 정함(안 제3조)

1)대상 : 도심지 및 관광지역(인사동·이태
원거리, 남대문·동대문시장, 신촌
등)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
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민간시설

※다중이용화장실 : 주유소, 음식점, 대
형빌딩, 터미널, 극장, 예식장, 시장,
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착
된 화장실

2)조건

-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
- 안내표지판,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
부착의 허용

▣보조범위·방법 및 기간을 정함(안 제4조)

1)범위 : 소모품비, 전기료, 상·하수도료,
파손에 의한 수리경비

2)방법

-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
산출을 근거로 매월 지급
-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
여 산정 지급

3)기간 :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
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

▣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
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
록 하고,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의무
를 규정함(안 제5조).

다.참고사항

▣관계법규 :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
행령 제24조제2항

- 지방재정법